
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148
------------	------

2019년 11월 26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9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황보연)

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통문화교육원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생략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일명 “제로페이”)으로 결제하는 경우 10%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하되 현행 부칙에서 “2019년 12월 31일”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“2020년 12월 31일”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<sup>1)2)</sup>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이 위탁 운영<sup>3)</sup>하고 있는 시설임
- 당초 서울시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당시 교육원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및 인재개발원 등의 이용료를 5~30% 범위 내에서 ‘19년 12월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17개 조례를 제출한 바 있으며, 제290회 정례회에 각 시설에 대한 감면 기한을 ‘20년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출한 상태임<sup>4)</sup>
-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 효과에 대한 논의 당시 “현행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라<sup>5)</sup>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, 경로·장애인·유공자·학생 등은 이미 15~50%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할인받고 있고,(별첨 참고)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9조 등에서는 “시·도지사는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” 하고 있음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3)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·수탁 협약서(2017.5.30.)

4) 행정자치위원회 5건, 기획경제위원회 1건, 환경수자원위원회 2건,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, 보건복지위원회 5건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건, 교통위원회 3건

5) 제9조(이용료)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%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“제로페이 이용자에게 10%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감면정책은 제로페이 이용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음

- 실제 조례 개정 이후 6개월간('19.5.2~10.31) 제로페이 이용실적은 715건으로 전체 이용실적(39,206건)의 약 1.8%, 이용금액은 29백만원으로 전체 이용금액(486백만원)의 약 6.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을 통한 이용저변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특히,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확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,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, 시설 이용요금 인하 및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참고로 동 조례개정시 현재의 이용실태가 유지될 경우 교육원의 이용료 수입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(1억원 미만)으로 추계되었음

**[별첨]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프로그램 할인 현황**

구 분	할인내용
헬스클럽	·운수종사자 1개월 기준 50%할인 35,000원 ·경로· 장애인· 국가유공자 1개월 기준 15%할인 60,000원 ·학생할인(초· 중· 고등학생 대상) 1개월 기준 15%할인 60,000원 ·헬스클럽 일일이용권 운수종사자 50%할인 4,000원
에어로빅	·운수종사자(가족) 1개월 기준 50%할인 30,000원
요 가	
벨리댄스	·운수종사자(가족) 1개월 기준 50%할인 20,000원 ·헬스·에어로빅 회원 1개월 기준 25%할인 30,000원
댄스스포츠	
라인댄스	
사우나	·운수종사자 50%할인 2,500원 (본인·직계가족) ·경로·장애인·국가유공자 20%할인 4,000원 (본인) ·교양강좌회원 40%할인 3,000원 (본인) ·소인(만2세~6세이하) 40%할인 3,000원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2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12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12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0년 12월 31일</u>-----.</p>